

의안
번호

48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10.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인순 의원 외 7명

나. 의안번호 : 제482호

다. 제출일자 : 2025. 05. 16.

라. 회부일자 : 2025. 05. 21.

2. 제안이유

- 성북구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통보되었거나 피해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27조(사용료 등) 제2항에 따른 [별표3]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제5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 (감면율 100분의 100)을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0. ~ 2025. 5. 2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통보되었거나 피해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100% 감면 대상에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을 추가하여 피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2024. 8.31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8,522건(전국)이고, 아동학대 판단은 53%인 2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를 차지하여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 >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신고 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¹⁾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아동학대 판단 건수 ²⁾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 1)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 아동학대 신고 건 중 동일 건 신고 등으로 바로 종결 처리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건수

2) 아동학대 판단 건수 :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

□ 주요내용

가. 안 제27조(사용료 등) [별표3] , 감면대상(감면율 100분에 100) 추가

[별표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에 감면대상 제5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통보 아동”을 감면율 100분의 100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1)에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2)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점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감면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별표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5.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		추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5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 어린이집에서 센터시설 사용시	100분의 30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 종합의견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등의 통보) 제3항²⁾에서는 구청장은 학대 피해 의심 통보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성북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에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통보아동을 추가하는 것은 대상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취지나 내용이 적절하고 특별한 위배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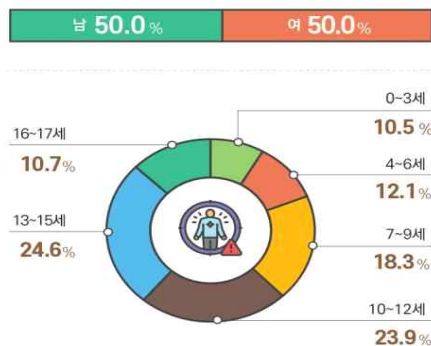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2023 아동학대 통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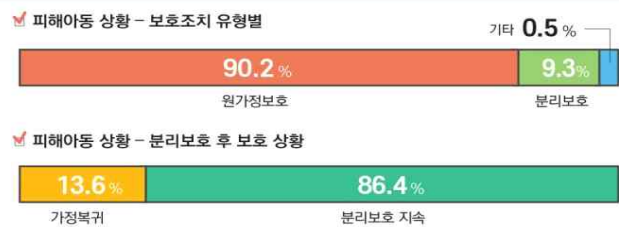
01 | 신고접수·판단 및 아동학대 유형



02 | 피해아동 특성



03 | 피해아동 상황



05 | 학대행위자 상황



06 | 서비스 제공 현황



07 | 아동학대 사망

